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5884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성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성규]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331㎡에 관하여 2020. 6. 24.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207,797,7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797,7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차전24926 사건으로 '2016년부터 2020년 7월말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합계 2억 73,067,280원 상당의 원금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목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8. 30. 'C는 원고에게 2억 73,067,28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9. 9. 3. C에 송달되어 2019. 9. 18. 확정되었다.

나. C는 2001. 10. 30. 분할전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3,180㎡(이하 '분할전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20. 6. 24.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분할전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20. 6. 24. 접수 제2913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 토지는 2020. 8. 12.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E 공장용지 331㎡, F 공장용지 265㎡, G 공장용지 974㎡(그후 G 공장용지 308㎡와 H 공장용지 666㎡로 다시 분할되었다), I 공장용지 360㎡, J 공장용지 517㎡(그후 J 공장용지 258㎡와 K 공장용지 259㎡로 다시 분할되었다), L 공장용지 166㎡, M 공장용지 236㎡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C는 2020. 11. 20.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는 2020. 11. 20. N 주식회사에게 2020. 10.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지번	면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소유자	증거
1		331	2020-06-24	피고	2020-09-08				갑 21
2		265	2020-06-24	피고	2020-09-31				갑 22
3		308	2020-06-24	피고	2020-10-30				갑 23
4		666	2020-06-24	피고					
5		360	2020-06-24	피고	2020-09-04				갑 24
6		258	2020-06-24	피고	2020-09-28				갑 25
6		259	2020-06-24	피고					
7		166	2020-06-24	피고	2020-08-31				갑 26
8		236	2020-06-24	피고	2020-11-09				갑 27
9		331	2020-06-24	피고	2020-11-20		2020-11-20	주식회사	갑 8 (이 사건 토지)
합계		3,1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4-1, 1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원고에 대한 2억 73,067,280원 상당의 목재대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2020. 6. 24. 피고에게 신탁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범위 내에서 원고의 잔존 물품대금 채권액 2억 7,797,701원(원고는 앞서 본 지급명령상의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14-1, 14-2의 각 기재만으로 분할전 토지가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할전 토지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自益信託)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참조).

갑 6, 7, 14-2, 21~27, 28-1~28-8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6. 6. 20.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고만 한다)과 분할전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1. O은행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신탁계약에 관한 신탁원부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O은행(우선수익권 28억 8,000만 원) 및 P 주식회사(우선수익권 8억 4,000만 원)이었고 C가 수익자인 사실, 그후 C는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20. 6. 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0. 6. 24.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우선수익자는 O은행(우선수익권 21억 6,000만 원. 다만 2020. 7. 3.경 2020. 7. 3.자 대출약정에 의하여 O은행의 우선수익권이 20억 4,000만 원 만큼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O은행의 우선수익권은 42억 원이 되었다)이고, C가 수익자 및 위탁자로 설정된 사실, 분할전 토지는 신탁등기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9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2020. 11. 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2020.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 11. 20. N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분할전 토지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36억 7,290만원(1,155,000원×3,180㎡)이었고,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역시 36억 46,524,000원 남짓(인천 서구 K 토지 및 H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C가 수익자 및 위탁자로 설정되어 있는 자익신탁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C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C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C는 O은행과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가 이 사건 계약 이후 2020. 11. 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C는 최소한 2020. 11. 20.까지는 이 사건 토지 상당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분할전 토지의 시가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나, 개별공시지가(약 36억 원) 및 우선수익권의 액수(42억)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C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임현수, 판사 박진옥